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제8호
----------	------------

제출연월일: 2007. 1. 12.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하여 감면 입주기한을 삭제함(안 제24조)
-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만 감면하던 것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연법인에 대하여도 감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2) 입법예고(2006. 11. 21 ~ 12. 1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2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한다.

제16조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제17조중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지방공사등”이라 한다)”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 하며,이하 이 조에서“지방공사등”이라 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중 “2001년12월31일까지 대체입주 하는 자”를 “대체 입주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중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경감 한다”로 한다..

제27조를 삭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그내용을 신청인에게”를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로 한다.

별지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p>1. (생략)</p> <p>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단서 신설></p>	<p>1.(현행과 같음)</p> <p>2.----- ----- -----<u>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u></p>
<p>제15조(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u>철도법</u>」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 한다.</p> <p>②(생략)</p>	<p>제15조(-----) ----- ----- ----- ----- -----<u>「철도안전법」 제45조</u> ----- ----- -----</p> <p>②(현행과 같음)</p>
<p>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u>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p>1.~2.(생략)</p>	<p>제16조(-----)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37조----- ----- ----- -----</p> <p>1.~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생략)	<삭제>
제27조의2(재산세 과표경감)(생략)	<삭제>
<p>제29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서식</u>에 의한 사천시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p> <p>②시장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u>그 내용을 신청인에게</u>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9조(-----)①----- -----<u>별지 제1호서식</u>----- ----- ----- ----- ----- ----- ②----- ----- --<u>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u> 의하여 <u>신청인에게</u>-----</p>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사천세감면조례 제 조			
<p>사천시세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p> <p>년 월 일</p> <p>위 신청인 인(서명)</p> <p>사천시장 귀하</p>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천 시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사천시세 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사 천 시 장(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관계법령 발췌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8.12.31>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①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

3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에 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규정한 사항
3. 「건축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시장정비구역 및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